

# LH 가포금호어울림NH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격완화]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1길 50 가포금호어울림NH 10년공공임대리츠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706세대 중 잔여세대 346세대 [전용면적 59㎡ 346세대]  
 ■ **시행사** : (주)NH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 려 드 린 니 다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금회 모집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창원가포지구 S-1블록 [이하 가포금호어울림NH]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주)NH제16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계약은 (주)NH제1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3.31) 및 추가모집공고 이후 잔여세대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이며,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3.31)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09(목)**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87**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가포금호어울림NH 공식홈페이지(www.lhgapo-s1.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가포금호어울림NH**를 사용하여 **아파트 외벽, 문주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브랜드는 **임대기간(10년)동안 변경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중복 청약하여 한 건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자격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2.06.09)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가포금호어울림NH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해당단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항 4호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되며,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나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청약신청 접수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	
				전자계약	현장계약
'22.06.09(목)	'22.06.20(월) 10:00 ~ 06.22(수) 17:00	'22.06.24(금) (16:00)	'22.06.28(화)~06.30(목) (10:00~17:00)	'22.07.25(월) 10:00 ~07.26(화) 17:00	'22.07.27(수) ~07.28(목) (10:00~16: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경남지역본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경남지역본부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보상판매부(LH경남지역본부)
-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서류접수 시 **당첨자는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2.07.25(월) 10:00 ~ 07.26(화) 17: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은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경남지역본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에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선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b>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b> - <b>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b>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창원가포지구 S-1블록[가포금호어울림 N+G]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3~25층 8개동 총 706세대 중 잔여세대 346세대(전용면적 59㎡ 346세대)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금회 공급호수			최고 층수	최초입주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당첨자	예비 입주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476	346	130		
S-1	059.9900A	59A	확장	59.99	19.0781	3.3238	28.2892	110.6811	39.5837	99	69	30	25	'21.08.17
	059.9900B	59B	확장	59.99	19.0781	3.3238	28.2892	110.6811	39.5837	201	151	50	25	
	059.9900C	59C	확장	59.99	19.0781	3.3238	28.2892	110.6811	39.5837	176	126	50	25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주택은 2021.08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초 입주시기는 2021.08.17이며, 금회 공급의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은 계약 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향후 지적공부정리 시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자정기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자정기기간내 입주 시)	
S-1	059.9900A	59A	37,000,000	7,400,000	29,600,000	435,000
	059.9900B	59B	37,000,000	7,400,000	29,600,000	435,000
	059.9900C	59C	37,000,000	7,400,000	29,600,000	435,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자정기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정기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연 6.5%, 변동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한도가 최초 모집공고(2021.03.31.) 및 추가모집공고(2021.05.27.)보다 완화되었으며, 추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S-1	059.9900A	59A	79,000,000	(-)329,170	116,000,000	105,830
	059.9900B	59B	79,000,000	(-)329,170	116,000,000	105,830
	059.9900C	59C	79,000,000	(-)329,170	116,000,000	105,830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S-1	059.9900A	59A	52,080	(-)25,000,000	12,000,000	487,080
	059.9900B	59B	52,080	(-)25,000,000	12,000,000	487,080
	059.9900C	59C	52,080	(-)25,000,000	12,000,000	487,080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S-1	059.9900A	59A	129,615	22,367	107,248
	059.9900B	59B	129,679	22,367	107,312
	059.9900C	59C	129,757	22,367	107,390

-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59㎡형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b>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b>
• 분양전환시기	<b>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b> 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II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중복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가포급호어울림NHF(창원가포 S-1블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불가(계약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됨)**  
 ※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2.06.24(금))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권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로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기간 산정 기준일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등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등·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방향·축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등·호 발생 시에도 등·호 변경불가)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기계약자, 중복신청 등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III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집일정 및 장소

구 분	일시	장소	비고
청약신청	'22.06.20(월) 10:00 ~ 06.22(수) 17:00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주택형별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접수만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각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가포금호어울림NHF는 1세대 내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계약체결불가)합니다.(청약 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거주지역,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공동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LH경남지역본부 1층 보상판매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 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의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의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주택홍보관(055-210-8400~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도장(서명가능)	신청자 구비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입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IV 신청 시 확인사항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지 및 계약(동호는 신청 주택형 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공개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우리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T.055-210-8400~1)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모집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방법은 본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V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등기우편 접수가능	계약체결(당첨자)
2022.06.24(금) 16: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앱 (apply.lh.or.kr)	2022.06.28(화) ~ 2022.06.30(목) 10:00~17:00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2022.07.25(월)10:00 ~ 07.26(화)17:00 (현장)2022.07.27(수) ~ 07.28(목) 10:00~16: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보상판매부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행별·축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확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 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2.06.28(화)~2022.06.30(목))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예정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하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단,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집사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필수 제출	
○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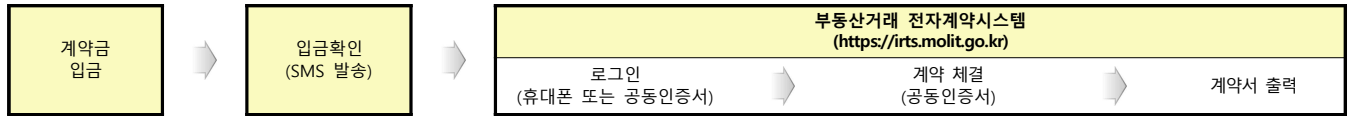
###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온라인 전자계약 (https://irts.molit.go.kr)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PC ②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현 장 계 약 체 결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 : 입금계좌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당첨자 본인명의 입금), ※ <b>현장수납 불가</b>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td> <td>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td> </tr> <tr> <td>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td> <td>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td> </tr> <tr> <td>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d>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기간 [2022.07.25(월)10:00 ~ 07.26(화)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참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계약체결 절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자의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황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주)NHF제16호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제, 주택성능등급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3.3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리츠)은 준공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단지로 **장애이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자산관리회사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창원가포 S-1	(주)NHF제16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9-81-06763)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금호산업(주) (104-81-31309) 우미건설(주) (409-81-31276) 아시아-HDT(주) (104-81-22547)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진광엔지니어링 (135-81-18222) (전기, 통신, 소방부문)

**가포금호어울림 LH 주택홍보관**

가포금호어울림 LH 주택홍보관	
	<p>■ 청약상담 및 계약체결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1층 보상판매부</li> <li>- 운영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li> </ul> <p>※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가포금호어울림 LH 홈페이지	분양문의
<p>■ 주 소 : <a href="http://www.lhgapo-s1.co.kr">www.lhgapo-s1.co.kr</a></p>	<p>■ LH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 055)210-8400~1</p>

2022. 06. 09

시 행사 : (주)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